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4
----------	------

제출일자 : 2025. 10. 17.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상위 법률 변경 사항 조문 이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상위법에 근거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 나. 조문 신설(안 제5조 ~ 안 제12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명시
- 다. 부칙 신설
 -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신설로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2025. 10. 1. ~ 10. 21.)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각각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업무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적·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그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2조제8호</u>----- ----- ----- ----- ----- ----- -----.</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신고 또는 법 제7조의 2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p>	<p>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u>제2조제8호</u>----- ----- ----- ----- ----- ----- ----- -----.</p>
<p>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u>긴급지원심의위원회</u>(이하 “<u>긴급지원심의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 ----- -----<u>긴급지원심의위원회</u>(이하 “<u>위원회</u>”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u>군수가 제1항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u></p>	<p><u><삭 제></u></p>
<p>③ <u>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u></p>	<p><u><삭 제></u></p>
<p><u><신 설></u></p>	<p><u>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u></p> <p><u>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u>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p> <p>1. <u>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2.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u>」 제2조에 따른 <u>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u></p> <p>3. <u>대구광역시 달성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u></p> <p>4.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u></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업무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7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②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위원회의 회의는 자연적·사회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그 소집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히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u>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u></p> <p><u>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11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그 밖의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관 계 법 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